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807)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근로자의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 (전재수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수진의원안, 김주영의원안)	2

I. 개요

1.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80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주영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 24.
- (3) 회 부 일 : 2025. 1.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부 소득에 비과세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물가가 지속 상승하면서 점심값 부담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근로자의 식사비용 부담을 경감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를 월 2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러목).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근로자의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 (전재수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수진의원안, 김주영의원안)

현 행	개정안
☐ 비과세소득(제12조제3호러목)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비과세 한도 상향 ○ (현행과 같음) - 월 25만원 이하 (김주영의원안) - 월 30만원 (이수진, 전재수의원안) -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윤준병의원안) ○ 시행일: 이 법 공포 후 시행(이수진의원안) 이 법 공포 후 3개월(전재수,윤준병,김주영의원안)

* 전재수의원안 2024. 11. 5. 제출(의안번호 5240), 윤준병의원안 2024. 12. 31. 제출(의안번호 7140), 이수진의원안 2025. 1. 17. 제출(의안번호 7602), 김주영의원안 2025. 1. 24. 제출(의안번호 7807)

☐ 개정안은 고물가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근로자의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

현행 “월 20만원 이하”에서 김주영의원안은 “월 25만원 이하”로, 이수진·전재수의원안은 “월 30만원”으로, 윤준병의원안은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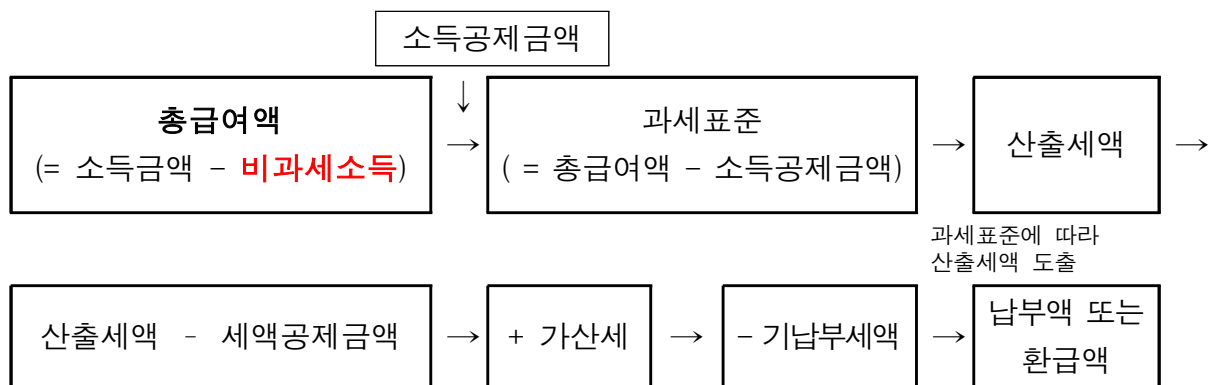
☐ 근로자의 식사 또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는 1996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최초 도입되면서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5만원 한도로 비과세되었으며, 2004년 한도를 10만원으로 상향하였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2022년에는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하였음.

□ 개정안은 고물가로 인한 근로자의 식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근로자의 식사 또는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개정안과 같이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어 근로자의 비과세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 동일한 연봉을 받더라도 총급여액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소득세의 산출세액이 줄어들게 됨.

[소득세액 계산 절차]



또한,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감소됨에 따라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¹⁾의 대상자가 일부 증가하는 효과도 함께 나타날 수 있으며, 4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²⁾, 건강보험³⁾, 고

1)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월세 세액공제(총급여 7천만원 이하) 등이 있음.

2)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사업장가입자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

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⁴⁾의 감면 효과도 발생함.⁵⁾

둘째,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외식 관련 소비자물가지수⁶⁾(이하 “외식물가지수”라 함)는 123.8으로 전년동월대비 3.0% 상승하였는데,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9로 전년동월대비 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근로자들의 식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전체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률보다 높아 체감 부담률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월별 외식물가지수]

구분	24년 9월	10월	11월	12월	25년 1월	2월	3월
외식물가지수	121.26	121.86	122.22	122.45	122.89	123.41	123.80
전월 대비 증감률(%)	0.0	0.4	0.3	0.2	0.35	0.4	0.3

주: 외식물가지수는 2020년을 기준(2020=100)으로 함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소비자물가동향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같은 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금액은 포함한다)을 뺀 소득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 조 (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5) 참고로 2022년 11월 진선미의원실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비과세 한도 10만원 인상(식사대 비과세 한도 인상)에 따른 4대보험 재정손실은 연간 약 3조6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6)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지수 동향(2020=100), 통계청(<http://www.kosis.kr>)

첫째, 근로자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2022년 세법개정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음. 이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그 한도를 조정된 것으로 추가적인 비과세 한도 인상은 세수감소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할 경우 10만원 인상 기준 연평균 2,992억원의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비과세 소득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근로소득자의 33%를 차지하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⁷⁾는 세부담에 변화가 없는 반면, 고소득자는 비과세소득의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큰 수혜를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 시 기업의 식사비 지급 여력이 높은 대기업 근로자 위주로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비과세 소득의 확대에 의하여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세 세수 비중이 낮은 현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부담 수준은 2022년 기준 6.6%로 OECD 평균 8.2%에 비해서는 1.6%p 낮고, G7 국가 평균 10.4%에 비해서는 3.9% 낮으며,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의 경우도 20.5%로 OECD 평균 23.5%, G7 평균 30.9%에 비하여 각각 3.0%p,

7) 2023년 귀속소득 기준 근로소득 면세자는 688만 명(면세자 비율 33%)이며, 전체 면세자의 99.1%는 총급여 4천만원 이하자임.(자료: 국세통계연보 4-2-5)

10.3%p 낮은 상황임.⁸⁾

문 의 처

02)6788-5158

8) 2024 대한민국 조세, 국회예산정책처